

	규정	문서번호	TWP-C110
		제정일자	2012. 07. 27.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25. 11. 04..
		개정번호	4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3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
- 부칙

작성부서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정일자	2012. 07. 27.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교무학생처장	부총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P-C110		
제정일자	2012. 07. 27.		
개정일자	2025. 11. 04..		
제정번호	4	페이지	2/4

	규정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P-C110
		제정일자	2012. 07. 27.
		개정일자	2025. 11. 04..
		개정번호	4
		페이지	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학기제”란 우리 대학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우리 대학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업무) ① 센터는 산학입학처에 소속하며, 그 운영은 산학입학처에서 총괄한다.

② 센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습기관의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각종 사고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제4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 중점교수 2명으로 한다.

	규정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P-C110
		제정일자	2012. 07. 27.
		개정일자	2025. 11. 04..
		개정번호	4
		페이지	4/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 및 학부 현장실습 배정·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학기제 활성화 및 현장실습 교육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현장실습학기제 성과 평가,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전부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